

「대학원논문제출자격시험시행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5조에 의한 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 및 전공 종합시험으로 하며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 시험

- 가. 석사학위과정 : 2회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나. 박사학위과정 : 2회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다.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4회 이상 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32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전공종합시험

- 가. 석사학위과정 : 18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 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3회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나. 박사학위과정 : 2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 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4회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다.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4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 이상인 자로서 6회 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3조(응시절차) 외국어 또는 전공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험지원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기일내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시기)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5조(시험과목) 외국어 및 전공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 시험

- 가. 석사학위과정 : 영어
- 나.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1개 외국어
-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 학생 및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별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2019. 3. 1. 2019. 9. 1. 2024. 2. 1.>

한국어 능력시험 입학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한국어교육학과는 5급 이상)
상기 외	정규 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국어강좌 100시간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라. 공인기관 시험 성적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시험응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신설 2019. 9. 1.><개정 2023. 3. 1.>

마. 한국어강좌 수료의 경우 현 학위 과정 내에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1.>

2. 전공종합시험은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시험과목 선정(재시험 포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에서 정한다.<개정 2023. 3. 1.>

제6조(출제범위) 외국어 및 전공 종합시험의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어 시험

가.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독해 능력이 전공분야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가를 평가할 수 있게 출제한다. 또한 학술 활동에 필요한 발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술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2. 전공종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출제한다.

나.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연구 방법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 및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출제한다.

제6조의 2(외국어 시험의 면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TEPS, TOEIC, TOEFL 등)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내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면제 기준은 학과에서 정한다.<개정 2012. 6. 1.>

② 내국인 박사과정 학생이 주요 외국대학 어학과정 시험에 합격 하였거나, 타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2. 6. 1.>

④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의학과 및 의과학과는 별도 면제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2. 9. 1.>

제7조(배점) 전공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은 석사학위과정,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공히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8조(시험위원) ① 시험위원은 학과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1인이 책임위원이 된다.

② 시험위원은 출제, 감독 및 채점과 합격여부를 심사한다.

제9조(합격사정) 시험의 합격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외국어시험 : 100점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과정은 60점이상,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7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

2. 전공종합시험 : 각 과목 100점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과정은 평균 60점이상,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평균 70점이상으로 한다. 이외 과락점수는 학과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3. 1.>

제10조(결과보고) 학과장은 자격시험 결과를 지체없이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서식에 의거 보고하고 시험지 일체는 학과에서 최소한 1년간 보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8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8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9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7조 및 제9조의 변경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외국어성적증빙서류 유효기간삼입에 따른 경과조치)제5조(시험과목) '라', '마'항의 경우, 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